

<p>접된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학원을 설립하고자 학원 최소면적(6,600㎡)에 미달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에서 해제될 2,247㎡를 자연녹지지역에 포함시키고,</p> <p>○대신 자연녹지 상단 계획도로 윗편에 있는 자연녹지 3,120㎡를 공원에 편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서,</p> <p>○공원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건은 현지확인후 처리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10px auto; width: 8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61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 : 마포구 합정동 414, 416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(51,400㎡) · 준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(3,600㎡) ·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 ·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본 마포구 합정동 414, 416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자치구 도시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의 일반주거지역 51,400㎡와 준주거지역 3,600㎡의 합정동 지구중심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</p> <p>○이 지역의 현황과 여건으로 보아 중심기능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고,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보아 변경 결정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</p> <p>※참고 : 일반상업지역 결정예정지 도면을 보면, 합정동 378-13 일대가 요철현상을 이루고 있어 인접 배후도로까지 상업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현지확인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	의안 번호	61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10px auto; width: 8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62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 : 마포구 성산동 590, 592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상업지역→유통상업지역(54,000㎡) · 도시계획사항 : 일반상업지역 ·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마포구 성산동 590, 592 일대 현재의 자동차 검사장 54,000㎡의 일반상업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</p> <p>○자동차검사장은 특정한 설비의 설치가 요구된 시설이므로 시설의 성질에 쫓아 일반상업지역보다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므로,</p> <p>○시에서 제출한 변경결정안에 동의 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10px auto; width: 8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63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 : 서초구 양재동 12 일대 및 서초동 1366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(43,230㎡) 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43,230㎡) 	의안 번호	62	의안 번호	63
의안 번호	61						
의안 번호	62						
의안 번호	63						

<p>• 주민의견 청취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재동 24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 서초동 1365-16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 서초동 1360-45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의 건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초구 양재지구 중심지역인 양재동 12 일대 및 서초동 1366 일대 43,230㎡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아울러 같은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</p> <p>○이 지역 양재 중심지구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타당한 변경안으로 사료되며, 특히 이 지역에 대한 도시미관과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도시설계지구 지정은 인접지역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제출한 지구지정안에 동의 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보류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84 1223 437 1290"> <tr><td>의안 번호</td><td>64</td>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 : 서초구 방배동 444-4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25,560㎡) •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25,560㎡) •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 - 방배2동 452-1 일대 상업지역 추가 지정 요망(미반영)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	의안 번호	64	<p>○서초구 방배동 444-4 일대 남현지구 중심지역에 대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결정안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합당하여 시의 변경결정안에 동의 의견이며,</p> <p>○또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과 함께 남현지구 중심지를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타당한 지정안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보류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07 831 954 898"> <tr><td>의안 번호</td><td>65</td>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p>○위치 : 서초구 방배동 3000 일대</p> <p>○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39,840㎡) •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39,840㎡) • 주민의견 청취결과 : 없음.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p>○서초구 방배동 3000 일대 39,840㎡에 대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은</p> <p>○시 및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던 지역이며, 이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미관과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록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</p> <p>○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변경결정 및 지구지정안에 동의 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</p>	의안 번호	65
의안 번호	64				
의안 번호	65				